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
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04
----------	-----

2024. 12. 11.(수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8명
- 나.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다.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라. 상정일자 : 2024년 11월 26일
 - 제4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- 마. 주요내용
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 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안치영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 생활체육의 활성화, 나아가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- 2022년 6월 16일 시행된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규정함(안 제5조)

- 스포츠클럽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6조)
-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을 규정함(안 제7조)
-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체육시설 및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에 대한 위탁을 규정함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신복순)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내 스포츠클럽과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,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「스포츠클럽법」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스포츠클럽법
<p>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

-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, 안 제5조에서 「스포츠클럽법」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스포츠클럽법

제5조(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(이하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안 제6조에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,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,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 등 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7조에서는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,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,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등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있음.
- 안 제9조에서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10조에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과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신설하였음.
-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「스포츠클럽법」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15일 제정되었음.
 -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, 같은 조 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 시책을 수립·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음.
- 이후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

기 위해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이 2022년 6월 15일 제정되었음.

- 반면, 충청북도가 시행하고 있는 「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」는 2021년 8월 6일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로 개정 작업을 거치지 않아 2022년 6월 15일 제정된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음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「스포츠클럽법 시행령」 제11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,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한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및 도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충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스포츠클럽법」 제3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스포츠클럽”이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 있으며 「스포츠클럽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2. “생활체육지도자”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도내에서 생활체육(장애인 생활체육을 포함한다)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생활체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시행계획의 수립 등) ① 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충청북도 스포츠클럽 진흥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6조(스포츠클럽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·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
2.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
3. 스포츠클럽의 시설사용료 보조
4.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7조(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)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
2.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
3.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
4.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8조(지도·감독)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게 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 결과,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제9조(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) 도지사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제10조(위탁 등) ① 도지사는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「스포츠클럽법」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1조(포상)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에 공적이 큰 법인·단체 등에게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